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예산편성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1993. 2. 9.

개정 1994. 2. 15.

개정 2001. 1.13.

개정 2001. 9. 3.

개정 2005. 10. 1.

개정 2010. 8.30.

개정 2012. 10. 25.

개정 2013.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성회예산편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과 사업변경을 요할 시 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
- 3.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예산운영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3조(예산편성 절차)

- 1. 기획처장은 매 회계년도(당해년 3월1일-익년 2월말) 개시 75일 이전에 기성회 세입·세출예산편성 지침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서에 시달한다.
- 2. 각 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회계년도 개시 45일전까지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 3. 위원회는 기획처장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한다.
- 4. 위원회가 예산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총장은 제출된 예산편성(안)을 검토·조정한 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결산)

- 1. 사무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5일 이내에 전회계년도 기성회 세입· 세출 집행결과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한다.
- 2. 기획처장은 사무국장이 제출한 전 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위원회 및 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31.)
 -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과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12.31.)

- 1.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공과대학 2명, 정보통신대학 1명, 에너지바이오대학 1명, 조형대학 1명, 인문사회대학 1명, 기술경영융합대학 1명과전체대학원에서 추천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2. 교수평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13.12.31.)
-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제6조(위원장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7조(회의)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8조(심의)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3. 2. 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93년 2월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199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최초 위원의 임기는 2003. 3. 31까지로 하되, 위원 중 1/2의 임기는 2002. 3. 3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제148호, 2012. 10.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호, 2013.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